

食品衛生法

○……1980년 12월 31일 法律 第3334號로……○
○……개정 공포된 食品衛生法 전문을 게……○
○……제한다. (編輯者註)……○

調 查 部

食品衛生法

公布 : 1962. 1. 20 法律 第1007號
改正 : 1967. 3. 30 法律 第1921號
1973. 1. 26 法律 第2532號
1974. 12. 21 法律 第2701號
1976. 12. 31 法律 第2971號
1980. 12. 31 法律 第3334號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법은 食品으로 인한 衛生上의 危害의 防止와 食品營業의 質的向上을 圖謀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向上과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① 이 법에서 食品이라 함은 모든 飲食物을 말한다. 다만 醫藥으로서 攝取하는 것은 例外로 한다.

② 이 법에서 添加物이라 함은 食品의 製造·加工 또는 保存을 함에 있어 食品에 添加·混合·浸潤 其他의 方法에 依하여 使用되는 物質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化學的 合成品이라 함은 化學的 手

段에 依하여 元素 또는 化合物에 分解反應 以外の 化學 反應을 일으켜 얻은 物質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器具라 함은 飲食器 其他食品 또는 添加物의 採取·製造·加工·調理·貯藏·運搬·陳列·授受 또는 攝取에 使用되는 것으로서 食品 또는 添加物에 直接 接觸되는 機械·器具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容器, 包裝이라 함은 食品 또는 添加物을 넣거나 싸는 物品으로서 食品 또는 添加物을 授受할 때 함께 引渡되는 物品을 말한다.

⑥ 이 법에 標示라 함은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 包裝에 明示된 文字 또는 圖形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食品衛生이라 함은 食品, 添加物, 器具 및 容器와 包裝을 對象으로 하는 飲食에 關한 衛生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營業”이라 함은 食品 또는 添加物을 採取·製造·加工·輸入·調理·貯藏·運搬 또는 販賣하거나 食品 또는 添加物에 關한 器具·容器 또는 包裝을 製造·輸入·運搬 또는 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調理士라 함은 調理士 免許를 받아 食品을 調理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⑩ 이 법에서 營養士라 함은 營養士 免許를 받아 營

業의 指導를 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① 이 法에서 集團給食所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繼續적으로 多數人에게 飲食을 供給하는 寄宿舍, 學校, 病院 其他 厚生機關 等の 給食施設을 말한다.

第2條의 2 (食品 等の 取扱) ① 販賣(販賣 이외의 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의 採取·製造·加工·使用·調理貯藏·運搬 및 陳列은 清潔히 하고 衛生的으로 行하여야 한다.

② 營業上 使用하는 器具·容器 및 包裝은 清潔하고 衛生的이어야 한다.

第2章 食品 및 添加物

第3條(販賣禁止)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製造·輸入·加工·使用·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

1. 腐敗 또는 變質되었거나 未熟한 것 다만, 一般的으로 人體의 健康을 害할 憂慮가 없고 食用으로서 無妨하다고 認定되는 것은 例外로 한다.
2. 有毒 또는 有害物質이 含有되었거나 附着한 것 다만 人體의 健康을 害할 憂慮가 없다고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것은 例外로 한다.
3. 病原微生物에 依하여 汚染되었거나 또는 그의 念慮가 있어 人體의 健康을 害할 憂慮가 있는 것
4. 不潔하거나 異物의 混入 또는 添加 其他의 事由로 人體의 健康을 害할 憂慮가 있는 것.

② 食品 또는 添加物로부터 그 主要成分 또는 營養成分의 전부나 一部를 감소 또는 제거하거나 食品 또는 添加物에 따른 物質을 混合함으로써 그 固有의 價値를 잃게 된 食品 또는 添加物에 대하여도 또한 第1項과 같다.

第4條(病肉 等の 販賣禁止) 保健社會部令의 定하는 疾病에 걸렸거나 그의 念慮가 있거나 또는 病死한 動物의 肉骨, 乳汁, 臟器 또는 血液을 食品으로서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眞열하

지 못한다.

第5條(化學的 合成品의 販賣禁止)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化學的 合成品 以外的 化學的 合成品과 이를 含有한 製劑를 食品의 添加物로 使用하거나 이를 含有한 食品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加工·使用·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

第6條(基準과 規格)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保健上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加工·使用·調理 및 保存의 方法에 관한 基準과 그 食品 또는 添加物의 成分에 관한 規格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② 保健社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定하여 지지 아니한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으로써 國民保健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것에 대하여 그 製造·加工業者로 하여금 製造·加工·使用·調理 및 保存의 方法에 관한 自家品質基準과 그 成分에 관한 自家品質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檢査機關의 檢定을 거쳐 이를 당해 食品 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輸入者가 要求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진 食品 또는 添加物은 그 基準에 맞는 方法에 의하여 製造·加工·使用·調理 또는 保存되어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은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加工·使用·調理·貯藏·運搬·保存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

第3章 器具와 容器包裝

第7條(有毒器具 等の 販賣, 使用禁止) 有毒 또는 有毒物質이 含有되었거나 附着되어 人體의 健康을 害할 憂慮가 있는 器具 및 容器, 包裝과 食品 또는 添加物에 接觸됨으로써 人體의 健康을 害할 憂慮가 있는 器具, 容器 및 包裝을 販賣하거나 販賣

의 목적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 또는 진열하거나 營業上 使用하지 못한다.

第8條(基準과 規格)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保健上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使用하는 器具·容器·包裝의 製造 方法에 관한 基準과 器具·容器·包裝 및 그 原材料에 관한 規格을 定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② 保健社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國民保健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製造 加工·業者로 하여금 그 器具·容器·包裝의 製造 方法에 관한 自家品質基準과 器具·容器·包裝 및 그 原材料에 관한 自家品質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檢査機關의 檢定을 거쳐 이를 당해 器具·容器·包裝 및 그 原材料의 基準과 規格으로 認定할 수 있다.

③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器具·容器·包裝 및 그 原材料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要求하는 基準과 規格에 依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定하여진 器具와 容器·包裝은 그 基準에 맞는 方法에 의하여 製造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器具와 容器·包裝은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하거나 기타 營業上 使用하지 못한다.

第4章 標 示

第9條(標示基準)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保健上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으로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과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規格 또는 基準이 定하여진 器具와 容器, 包裝의 標示에 關하여 必要한 基準을 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標示에 關한 基準이 定하여진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은 그 基準에 맞는 標示가 없으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營業上 使用하지

못한다.

第10條(虛偽標示 等の 禁止) ① 食品添加物과 器具 容器 및 包裝의 명칭·제조방법 및 品質에 關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包裝은 지나치게 큰 誇大包裝을 하지 못하며 食品添加物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食品添加物의 영양가 및 성분에 關하여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必要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5章 食品添加物公典

第11條(食品添加物公典作成) 保健社會部長官은 食品添加物公典을 作成하여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基準과 規格이 定하여진 添加物과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基準이 定하여진 添加物에 關하여 當該 基準과 規格을 收錄하여야 한다.

第6章 檢 査

第12條(製品檢査)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國民保健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의 製品에 關하여 檢査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品, 檢査를 할 수 있는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의 種類와 그 製品檢査의 方法, 節次, 手數料 其他 檢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3條(製品檢査의 標示)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品檢査를 하였을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製品檢査에 合格한 食品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에 그 뜻을 標示하여야 한다.

第14條(無標示品の 販賣禁止) 第12條 第1項 規定에 의하여 製品檢査를 받아야 할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은 그 製品檢査에 合格한 뜻의 標示

가 없으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운반 또는 進열하거나 기타 營業上 使用하지 못한다.

第15條(輸入申告) ①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使用하는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 또는 包裝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輸入할 때마다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輸入할 때마다 保健社會部長官이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를 받은 保健社會部長官은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通關節次完了 前에 關係 檢査機關 또는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輸入되는 食品·添加物·器具·容器 또는 包裝에 대하여 必要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第16條(臨檢·收去等) ①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營業을 하는 者(이하 “營業者”라 한다) 또는 기타 關係人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場所·事務所, 倉庫·製造所·貯藏所·販賣所 또는 기타의 場所에 臨檢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食品·添加物·器具와 容器·包裝·營業施設과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하거나 實驗上 必要한 程度의 食品·添加物·器具와 容器·包裝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營業關係의 帳簿나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自家品質管理狀態가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는 基準 以上인 營業所에 대하여는 臨檢·收去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 關係 公務員은 臨檢·檢査 또는 收去할 수 있는 權限을 表示하는 證標를 携帶하여야 하며 關係인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第17條(食品衛生檢査機關의 指定)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製品檢査와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收去한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包裝의 實驗에 관한 事務를 行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한 公共機關中에서 食品衛生檢査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食品衛生檢査機關으로 指定된 機關은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拒絕하지 못한다.

第18條(食品衛生監視員) ①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關係公務員의 職務를 行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와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道에 食品衛生監視員을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 任命, 職務와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章 營 業

第19條(食品衛生管理人) ① 乳製品, 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食品 및 添加物을 製造 또는 加工하는 營業者는 그 製造 또는 加工을 衛生的으로 管理하게 하기 위하여 그 施設마다 專任의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어야 한다. 다만 營業者 自身이 食品衛生管理人이 되어 直接 管理하는 施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同一한 營業者가 同一場所의 施設에서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어야 할 食品 또는 添加物을 2種이상 製造 또는 加工하는 경우에는 食品衛生管理人 1인을 둘 수 있다.

② 食品衛生管理인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되지 아니하도록 그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加工에 從事하는 者를 指導 監督하여야 하며, 製品 및 施設의 衛生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 食品 또는 添加物에 製造나 加工을 하는 營業者는 第2項의 食品衛生管理인의 業務를 妨害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必要한 要請을 받은 때에는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拒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食品衛生管理인의 資格과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9條의 2(品質管理 및 報告) ① 第19條 第1項 본문에 該當하는 食品 및 添加物의 製造나 加工을 하는 營業者는 原料管理·製造管理 其他 品質管理

上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營業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 및 添加物의 生産實績 등을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20條(遊興營業者와 從事者) 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遊興飲食店 營業을 하는 業所 以外의 業所에 는 遊興에 從事하는 者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遊興飲食店 營業을 하는 者 및 遊興에 從事하는 者의 遵守事項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21條(健康診斷 및 衛生講習) ① 食品 및 添加物의 채취·製造·加工·調理·貯藏 또는 販賣하는 營業에 從事하는 者는 健康診斷 및 衛生講習을 받아야 한다. 다만,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者는 衛生講習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은 結果 他人에게 危害가 끼칠 憂慮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된 者 및 衛生講習을 받아야 할 時期에 받지 아니한 者는 그 營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③ 營業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 및 衛生講習을 받지 아니한 者나 健康診斷 및 衛生講習의 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된 者는 그 營業에 從事시키지 못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 및 衛生講習의 實施方法과 營業에 從事하지 못하는 疾病의 種類와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22條(營業의 種類와 施設 및 衛生等級 基準)

①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業·加工業·販賣業 食品接客營業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營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業種別 施設基準에 適合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營業의 衛生等級에 關하여는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23條(營業許可 등) ①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營業

을 하고자 하는 者(第5項에 해당하는 者는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營業場所 또는 施設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할 때에는 必要한 條件을 附할 수 있다.

③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營業中 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製造業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食品製造業, 食品加工業 또는 添加物製造業에 있어서는 그 製造品目마다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그 製造品目を 變更하거나 追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廢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 食品接客營業 또는 食品販賣業 등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營業場所, 施設을 變更하거나 休業·再開業 또는 廢業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23條의 2 (條件附 營業許可) ①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大統領令이 定하는 營業에 대하여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期間內에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출 것을 條件으로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 理由없이 第1項의 期間內에 그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第23條의 3 (營業許可 등의 制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3條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1. 當該營業의 施設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業種

別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當該營業이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때에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다만, 第23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品目許可가 取消된 때에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3. 申請者(申請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業務를 行使하는 機關을 包含한다)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者인 때에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4. 公益上 또는 食品添加物의 需給調節上 그 許可를 제한할 必要가 있다고 인정되어 保健社會部長官이 지정하는 營業 또는 品目に 해당될 때.

第24條(廢棄處分 等)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營業者가 第3條 내지 第5條, 第6條 第4項, 第7條, 第8條 第4項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包裝을 압류 또는 廢棄하게 하거나 其他 營業者에 대하여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除去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道知事は 第23條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製造加工·調理한 食品·添加物 또는 器具·容器·包裝이나 이에 使用한 器具·容器·包裝 등을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廢棄하게 할 수 있다.

第25條(施設의 改修命令 等) ①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營業者가 그 營業의 施設에 관하여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

② 保健社會部長官은 食品衛生上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營業者에 대하여 必要한 指導를 하거나 食品, 添加物, 器具, 容器나 包裝의 原料, 製造方法, 成分 또는 그 配合比率에 대한 變更을 命할 수 있다.

第26條(營業許可의 取消 等) ① 保健社會部長官·서

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營業許可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하거나 그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營業所의 閉鎖는 第23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營業에 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第3條 내지 第5條, 第6條 第4項, 第7條, 第8條 第4項, 第9條 第2項, 第10條, 第14條, 第19條 第1項 내지 第3項, 第19條의 2, 第20條 第21條 第3項, 第23條 第1項後段·第3項·第4項·第5項 後段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第2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에 違反한 때

3. 第24條 第1項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② 保健社會部長官,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營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命令에 違反하여 계속 營業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申告된 營業의 그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③ 保健社會部長官,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는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休業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④ 保健社會部長官,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2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品目 許可를 받은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당해 品目を 製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製造品目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⑤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閉鎖命令을 받은 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同一한 場所에서 同種의 營業을 할 수 없다.

第26條의 2(營業許可 等の 取消要請) 保健社會部長官은 畜産物 加工處理法·水産業法 또는 酒稅法の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免許를 받은 者가 第3條 내지 第6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당해 許

可 또는 免許를 管轄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許可 또는 免許의 全部 또는一部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을 停止시키거나 또는 其他 衛生上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다만, 酒類의 境遇에는 保健犯罪團束에 關한 特別措置法이 정한 有害基準에 該當되는 경우에 限한다.

第26條의 3 (聽問) ① 保健社會部長官,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26條의 規定에 의 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營業者 또는 그 代理人의 출석을 要求하여 聽問을 行하여야 한다. ② 聽問의 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 8 章 調理士 및 營養士

第27條(調理士) 大統領令의 定하는 飲食店과 集團給食所에는 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飲食店의 營業者와 集團給食所의 營業者 自身이 調理士가 되어 直接 飲食을 調製하는 飲食店과 集團給食所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第28條(營養士) 大統領令의 定하는 集團給食所에는 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集團給食所의 營業者 自身이 營養士가 되어 直接 營養의 指導에 從事하는 集團給食所에 있어서는 例外로 한다.

第29條(調理士의 免許) 調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は 調理士資格 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の 免許를 받아야 한다.

第30條(營養士의 免許) 營養士가 되고자 하는 者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營養士 資格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教育法에 의한 專門學校·初級學校 또는 大學(教育大學 및 師範大學을 包含한다)에서 食品學 또는 營養學을 전공한 者
2. 外國에서 營養士 免許를 받은 者
3. 外國에서 營養士 養成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인정하는 者

第31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될 수 없다.

1. 精神病患者 또는 心身衰弱者
2. 傳染病患者
3. 麻藥 其他 有毒性 物質에 中毒된 者
4. 素行이 極히 不良한 者로서 調理士 또는 營養士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者

第32條(免許取消)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營養士 또는 調理士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한다.

1. 第31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
2. 調理士가 그 調理業務에 있어서 食中毒 其他 衛生上 重大한 事故를 發生하게 하였을 때
3. 免許證을 他人에게 貸與하여 이를 使用하게 한 때

第33條(各稱使用의 禁止)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아니면 調理士 또는 營養士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34條(委任事項) 調理士·營養士의 資格試驗·免許 및 그 手数料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34條의 2 (國民營養調查 및 指導)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營養을 改善하기 위하여 國民營養調查를 實施한다.

② 國民營養調查事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道에 國民營養調果員을 둔다.

③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道에는 營養指導員을 두어 給食·營養에 關한 知識의 向上 및 食品의 調理方法·改善 等に 필요한 援助 및 指導業務를 行하게 한다.

④ 國民營養調查의 方法·項目·國民營養調查員 및 營養指導員의 資格·任命 기타 國民營養調查實施에 關한 項目 및 營養指導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9 章 食品衛生審議委員會

第35條(食品衛生審議委員會) 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依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調查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 食品衛生審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食中毒防止에 관한 事項
2. 食品添加物公典作成에 관한 事項
3. 食品 및 添加物の 基準과 規格의 制定에 관한 事項
4. 食品衛生과 玩弄品衛生에 관한 事項
5. 其他 重要な 事項

第36條(委任事項) 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0章 雜 則

第37條(國庫補助) 保健社會部長官은 每年度 豫算의 範圍內에서 다음 各號의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1. 第16條 第1項(第4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收去에 要하는 經費
2. 第17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食品衛生檢査機關에서의 檢査와 實驗에 要하는 經費
3.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食品衛生監視員에 要하는 經費
4. 第21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實施에 要하는 經費
5. 第24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廢棄에 要하는 經費
6. 第39條(第40條 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死體의 解剖에 要하는 經費

第38條(食中毒에 關한 調查報告) ①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에 起因하여 中毒을 일으킨 患者 또는 그 疑心이 있는 者를 診斷하였거나 그 死體를 檢査한 醫師는 遲滯없이 管轄保健所長 또는 그 支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保健所와 그 支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市, 邑, 面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保健所長, 그 支所長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市·邑·面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받았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遲滯없이 그 眞狀을 調查하고 市·邑·面長은 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支所長은 保健所長을 邑·面長은 郡守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③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調查를 하였거나 報告를 받았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遲滯없이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39條(死體解剖)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食品, 添加物, 器具와 容器, 包裝에 起因한 疾病 또는 그에 起因하였다고 疑心되는 疾病으로 死亡한 者의 死體를 그 遺族의 同意를 얻어 解剖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死體를 解剖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原因을 判明할 수 없고 그로 因하여 國民保健에 重大한 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遺族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여도 그 遺族에게 通知를 한 後에 死體를 解剖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刑事訴訟法의 規定에 依한 強制處分을 排除하지 아니한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死體를 解剖할 때에는 特히 禮儀를 지켜야 한다.

第40條(玩弄品等에의 準用規定) ① 乳幼兒가 接觸함으로써 그 健康에 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玩弄品으로써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것에 關하여는 第3條, 第5條 내지 第10條, 第12條 내지 第17條 第19條 내지 第23條, 第23條의 2, 第24條 내지 第26條 第2條의 3, 第38條 및 第39條의 規定에 準用한다.

② 集團給食所에 對하여는 第7條 내지 第9條, 第14條, 第16條, 第17條, 第21條, 第22條, 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野菜, 果實 또는 器具, 容器의 洗淨에 사용되는 中性洗劑에 對하여는 第3條, 第6條, 第9條, 第1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0條의 2 (同業者組合) ①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아 營業을 하는 者는 그 營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고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하기 위하여 業種別로 同業者組合을 設立할 수 있

다.

② 同業者組合은 그 共同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同業者組合聯合會를 設立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同業者組合과 第2項의 同業者組合聯合會는 각각 法人으로 한다.

④ 同業者組合 및 同業者組合聯合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地區를 定하여 地區內의 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者의 3分の 2 이상의 同意를 얻어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定款 기타 필요한 事項을 定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⑤ 同業者組合 및 同業者組合聯合會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0條의 3 (委任規定) 이 法에 의한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區廳長市長·郡守 또는 保健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41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1章 罰 則

第42條 削除<67.3.30法 1921>

第43條(罰則) ① 第3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4條 또는 第5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懲役과 罰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44條(同前) ① 第6條 第4項(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7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5條 第1項(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第23條 第1項(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懲役과 罰金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45條(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 第4項(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9條 第2項(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0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4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9條 第1項, 第23條 第3項 第5項(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22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또는 第23條 第2項(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의한 條件에 違反한 者

3. 第24條 내지 第26條(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各各 包含한다)의 規定에 의한 處分(許可取消處分을 제외한다) 또는 命令에 違反한 者

4. 第27條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46條(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0萬圓 以下의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한다.

1. 第15條 第2項(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第16條 第1項(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의한 關係檢査機關 또는 關係公務員의 臨檢·檢査 또는 收去를 拒否하거나 防害 또는 기피한 者

2. 第1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怠慢히 하여 이 法에 違反한 食品 또는 添加物을 製造, 加工하게 한 食品衛生管理人

3. 第20條 第1項, 第33條 또는 第38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이 法에 의한 報告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報告 또는 申告를 한 者

第4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義務에 關하여 第43條 내지 第46條의 違反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①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90일을 經過한 後에 施行한다.

② 다음 各號의 法令은 이를 廢止한다.

1. 1900年 法律 第15號 飲食物 其他 物品取締規則에 關한 件
2. 1911年 總令 第113號 衛生上 有害飲食物 및 有害物品取締規則
3. 1912年 總令 第121號, 메칠알골(木精)取締規則
4. 1911年 總令 第134號 清涼飲料水 및 水雪營業取締規則
5. 1916年 舊令 第 2 號 料理室, 飲食店營業取締規則
6. 1945年 軍政法令 第23號 酒精飲料의 販賣禁止
7. 1946年 軍政法令 第83號 公設浴場 및 飲食店의 免許中本法에 抵觸되는 條項
8. 1940年 總令 第114號 朝鮮牛乳營業取締規則
9. 1961年 總令 第 3 號 藝妓, 酌婦, 藝妓置屋取締規則

③ 이 법 施行當時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받은 營業許可는 이 법에 依하여 받은 許可로 본다.

다만, 이 법에 依한 施設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는 施設은 이 법 施行日로부터 1年 以內에 이 법에 依한 施設基準에 適合하도록 그 施設을 改修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營業許可를 取消한다.

附 則<67. 3. 30 法律1921號>

이 법은 公布後 2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73. 2. 16 法律2532號>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74. 12. 21 法律2701號>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76. 12. 31 法律2971號>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調理士에 對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當時 증건의 規定에 依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調理士의 養成學校 또는 養成機關에 在學中인 者에 대하여는 第29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증건의 예에 依하여 調理士 免許를 할 수 있다.

③(營養士에 對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 當時 증건의 規定에 依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한 營養士의 養成學校 또는 養成機關에 在學中인 者로서 1977年 3月 以前에 修了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30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증건의 예에 依하여 營養士免許를 할 수 있다.

附 則<80. 12. 31 法律3334號>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불량식품 뿌리뽑아 건강사회 이룩하자